붙임 1.

수익자총회 소집통지서

수익자님의 댁내의 건승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칸서스사할린부동산투자신탁 1 호 약관 제 28 조 및 제 29 조에 의하여 수익자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펀 드 명 :칸서스사할린부동산투자신탁 1 호
2. 일 시 : 2010 년 12 월 9 일 (목) 11 시
3. 장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신한금융투자빌딩 9 층 칸서스자산운용 대회의실
4. 회의목적사항

《부의 안건》

<u>제 1 호 의안 : 투자신탁 계약기간 연장 (45 개월에서 63 개월)</u>

5.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방법

금번 총회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 71 조 3 항에 의거, 서면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으므로 동봉한 서면에 의하여 각 의안에 대하여 가부를 표시하여 총회일 전일(<u>2010 년 12 월 8 일</u>)까지 팩스 또는 우편으로 당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FAX 번호 : 02-2077-5089
-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신한금융투자빌딩 9 층 칸서스자산운용

6. 수익자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수익자총회 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수익자총회 참석장, 위임장(위임사실 증명서류), 대리인신분증

7. 기타사항
   - 수익자총회 기념품은 회사경비 절감을 위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문의 전화번호 : 02)2077 - 5065 (칸서스자산운용 부동산운용본부)**

8. 첨부 : 1) 서면 의결권 행사 통지서, 2) 수익자총회 의결사항
   3) 수익증권 매수청구권 행사 안내, 4) 반대의사 통지서 및 매수 청구서, 5) 위임장

2010 년 11 월 15 일

칸서스자산운용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영재 (직인생략)

서면 의결권 행사 통지서

1.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란 대부분의 수익자가 물리적.시간적 제한으로 인해 수익자총회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편 등으로 수익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 71 조에 의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수익자께서는 굳이 수익자총회장에 직접 참석하지 않으시더라도 수익자의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제도를 활용하시어 수익자의 의견이 펀드의 운영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방법
   1) 보내드린 통지서의 수익자총회 부의 안건을 읽어 주십시오
   2) 의결권 표시 방법 : 아래의 표 '찬성 또는 반대'란에 수익자의 의사에 따라 찬,반의 여부를 표시하여 주십시오.
   3) 수익자 성명란은 기명날인(사인도 가능)하셔야 합니다.
   4) 수익자께서 의사표시하신 서면의결권행사 통지서를 밀봉하시어 당사 (칸서스자산운용㈜ 부동산운용본부)로 수익자총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 도착한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모두 집계되어 수익자총회 당일 직접 참석한 수익자의 의결권과 합산되어 수익자총회 의안의 투표에 반영됩니다.

칸서스자산운용㈜ 귀중

본인은 2010 년 12 월 9 일 개최되는 ' 칸서스사할린부동산투자신탁 1 호'의 수익자총회 의안에 대한 의결권을 아래와 같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 71 조 제 3 항에 의한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로 행사하고자 합니다.

<table>
<tr><td>수익자명</td><td colspan="2">(인)</td><td rowspan="5">수익자총회 참석장상의 수익자정보와 동일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d></tr>
<tr><td>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td><td colspan="2"></td></tr>
<tr><td>주소</td><td colspan="2"></td></tr>
<tr><td>전화번호</td><td colspan="2"></td></tr>
<tr><td>보유좌수</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제 1 호 의안</td><td rowspan="2">투자신탁 계약기간 연장</td><td colspan="3">찬성 (　　)</td></tr>
<tr><td colspan="3">반대 (　　)</td></tr>
</table>

2010 년　　월　　일

성명　　(인)

<u>수익자명과 성명란에는 반드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u>

수익자총회 의결 사항

<u>제 1 호 의안 : 투자신탁 계약기간 연장</u>

- 약관 제 11 조 제 1 항 변경

<참조. 약관 변경 대비표>

현 행	변 경 (안)
제 11 조(신탁계약기간) ①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45 개월간으로 한다.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시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투자신탁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제 11 조(신탁계약기간) ①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63 개월간으로 한다.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시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투자신탁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②(생략)	②(현행과 같음)
(신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0 년 12 월 10 일부터 시행한다.

수익증권 매수청구권 행사 안내

1. 수익증권 매수청구권이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하 "자산운용업법"이라 함) 제 73 조에 따라 해당 총회의 의결에 반대하는 수익자께서는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에 대하여 매수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인 **2010 년 11 월 18 일** 현재 수익자명부에 등재된 수익자로서 매수청구권 행사시점까지 소유 증권을 계속 보유하고, 다음 행사요령에 따른 절차를 취하셔야 합니다.

2. 매수청구권 행사요령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다음과 같이 반대의사 통지 및 매수청구권 행사 등의 절차를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가. 안건(신탁약관의 변경 등)에 대한 반대의사 통지

'반대의사 통지서'(붙임 양식)를 작성하여

➔ **실질수익자 (판매회사를 통하여 수익증권을 소유하고 있는 수익자, 이하 "실질수익자"라 함)는 총회일 2 영업일전(2010 년 12 월 7 일)까지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나. 매수청구권 행사

총회에서 해당 안건이 승인된 경우에는 '반대의사 통지서'를 제출한 수익자에 한하여 '매수청구서'(붙임양식)를 작성하여

➔ **실질수익자는 매수청구종료일 2 영업일전 (2010 년 12 월 27 일)까지 판매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3. 매수가격과 지급예정일자

자산운용업법 제 73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67 조에 의거하여 매수가격은 2011 년 1 월 11 일의 NAV (2011 년 1 월 11 일 영업일 기준가격)으로 지급합니다. 매수대금은 2011 년 1 월 11 일에 거래하는 판매회사 계좌를 통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4. 수익증권 매수가격의 조정신청 절차 (주의 요망)

간접투자증권은 신탁약관에서 정한 수탁은행에서 간접투자재산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수탁은행에서 보관하고 있는 신탁재산에 대한 평가금액은 관련규정에 따라 별도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관에서 매수가격이 정해짐에 따라(자산운용업법 시행령 제 67 조) 별도의 매수가격 조정신청절차는 없음에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5.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 매수 연기

본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연장을 통해 투자금의 원활한 상환을 목적으로 하는 바, 수익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가결시 반대수익자는 위 절차에 따라 보유 수익증권에 대한 매수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나, 본 투자신탁에서 부동산투자사업에의 자금대여에 투자한 자금이 상환되기까지 이에 응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려드리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 73 조 5 항에 의거 자산운용회사는 매수자금의 부족 등으로 반대수익자가 청구한 수익증권 매수 요청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사항

- 매수청구 종료일 이후에는 매수청구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실질수익자의 경우에는 판매회사의 사무업무처리 일정에 따라 '총회의결 반대의사 통지서' 및 '수익증권 매수청구서' 제출시한 1~2 일 전에 마감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대의사 통지서 및 매수 청구서

[총회 의결 반대의사 통지서]

본인은 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하여 귀사의 칸서스사할린부동산투자신탁 1 호의 총회 의결사항(안건 기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반대합니다.

수익자번호	
소유증권수	좌
반대의사표시증권수	좌

주 소 :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 (인) (연락전화번호 :)

칸서스자산운용 대표이사 귀하

==========절 취 선==========

[수익증권 매수 청구서]

본인은 귀사의 칸서스사할린부동산투자신탁 1 호의 총회 의결사항(안건 기재)에 반대하여 아래와 같이 매수청구를 청구합니다.

수익자번호	
소유증권수	좌
반대의사표시증권수	좌
매수청구 증권수	좌

주 소 :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 (인) (연락전화번호 :)

칸서스자산운용 대표이사 귀하

** 본인 참석시에는 본 위임장은 필요 없으며 대리인 참석시만 지참 바랍니다.

위 임 장

* 위임을 하는 자

수익자 성명		소유 수익증권 수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의결권있는 수익증권수	

* 위임을 받는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인은 상기 _____를(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2010 년 12 월 9 일 개최하는 칸서스사할린부동산투자신탁 1 호의 수익자총회에 참석하여 아래의 찬부 표시대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권한을 위임합니다.

- 아 래 -

의안	찬성	반대	기권
제1호			

년 월 일

위임자 수익자명 (인) ※인감도장 날인(인감증명서첨부)
주 소

※ 대리인 참석시 준비물
- 본 위임장에 위임자와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 후 위임자 날인 必
- 수익자총회 참석장
- 대리인(수임자) 신분증

<u>본 준비물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수익자총회 참석이 불가능합니다.</u>

붙임 **2.** 칸서스사할린부동산투자신탁1호 수익자총회 신문공고 사본

<한국경제신문, 2010.11.03일자>

수익자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49조제4항 및 칸서스사할린부동산투자신탁1호 약관 제18조에 의거하여 2010년 11월 18일 현재 수익자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수익자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 권리수익자 확정을 위해 2010년 11월 19일부터 2010년 11월 22일까지 수익증권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수익자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번지 신한금융투자타워 9층

칸서스 사할린 부동산 투자신탁1호 칸서스자산운용(주)

대표이사 김 영 재

수익자명부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수희

붙임 3. 칸서스사할린부동산투자신탁 1 호 매수청구방법 및 절차통보

1. 매수청구 주주/수익자 확정 기준일 : 2010 년 11 월 18 일

2. 반대의사 접수 시한 : 2010 년 12 월 7 일

3. 주주/수익자 총회일 : 2010 년 12 월 9 일

4. 매수청구행사 수익자의 자격 : 수익자총회 전 판매회사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한 주주/수익자에 한함

5. 매수청구행사 접수시한 : 2010 년 12 월 29 일

6.. 매수가격 : 2011 년 1 월 11 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영업일 기준가)

7. 매수대금 지급 예정일 : 2011 년 1 월 11 일에 지급함

8. 매수청구 취하 여부 : 불가
(판매사(운용사) 및 수익자의 쌍방 동의가 있는 경우 예외적 인정)

9. 기타 : 위 내용에 불구하고, 수익자총회가 연기될 경우 위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매수자금의 부족 등으로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에 응할 수 없을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수익증권 매수를 연기할 수 있음